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안건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 목 차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6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18
5.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6.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26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834호
----------	--------

2023. 02. 2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02. 02. 옥동준, 오해정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 2023. 02. 03.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02. 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오해정 의원)

### 가.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3. 25.)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제7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7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18조~제25조).
-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26조~제27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하여 정함(안 제28조~제3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가.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하였고,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 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정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양천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탄소중립 양천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나. 조문별 검토

- 본 조례안은 총칙 총 6장과 33개의 본칙 조문 및 4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 1장 총칙의 조문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양천구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안제6조는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 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양천구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법에 의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공포 및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조문은**

- 안 제12조는 법에 따라 구성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양천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조문은

- 안 제18조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20조에서 제25조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등 확대,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등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규정하고, 법에 의하여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토록 규정 함.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조문은

- 안 제26조에서 안 제27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조문은

- 안 제3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32조에서 안 제33조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 및 필요성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831호
----------	--------

2023. 02. 2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02. 02. 이수옥 의원 외 6명
- 나. 회부일자 : 2023. 02. 03.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02. 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이수옥 의원)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 및 인원을 규정함(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850℃ 이상 110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400℃ 이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120℃ 정도로 낮아진 고압증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시설로,
  -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이하“양천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함)은 목동신시가지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여열을 이용하기 위해 150톤/일 규모로 1983년 11월 착공하여 1986년 12월 준공하였으나 이후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400톤/일 규모로 1992년 12월 증설 착공하여 1996년 2월 준공하여 운영 중 2006년 12월부터는 강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소각하고 있음.
  
-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서울특별시)이 시설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바,
  
-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고 함)는 매2년 마다 양천구청(청소행정과)에서 목동 1단지아파트, 한신청구아파트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구의회

의결안으로 제출하면, 구의회는 추천자를 의결·선정하여 양천구청에 통보하고, 양천구청장이 이를 서울특별시에 추천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19년 11기 협의체 위원 후보자 추천부터 배수 추천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으며, 결국에 2011년 12기 협의체 위원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1기 위원이 지금까지 대행하고 있는 현실임.

- 지난 2022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바, 이에 따라 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폐촉법에 따라 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는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주민대표로 정의함.
- 안 제3조는 추천 의뢰 시기 및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수를 아파트 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수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는 일조 할 것이라 판단되며, 양천구청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협의회 주민대표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 첨부 수정안 참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831-1호
----------	----------

2023년 2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위원의 수를 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인원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첨부 : 1.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새롭게 모집·선정한”을  
“공개모집이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하  
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선정된”을 “구성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목동신시가지1단지 아파트 5명, 목동한신청구 아파트 5명  
으로”를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로 한다.



상자의 수는 목동신시가지1단지 아파트 5명, 목동한신청구 아파트 5명으로 한다.

-----  
----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830호
----------	--------

2023. 02. 2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02. 02. 황민철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23. 02. 03.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02. 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황민철 의원)

### 가. 제안이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임차인보호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구청장,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등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가.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 최근 주택시장 동향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임대차(전세 및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임대인 및 임차인간 임대료·시설 개보수 등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집값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수해 처음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을 갖고 계약을 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국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방지 방안과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분쟁예방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용 건물로 규정함.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예방 및 전세사기 등 피해 회복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는 임대차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안전한 임대차 계약관련 홍보 및 교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는 임차인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주거복지에 안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적 한계 또한 명확한 현실임.
- 참고로 양천구에서는 전·월세 분쟁 관련하여 매주 분야별(법률, 부동산, 세무)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 2021년 1월부터 확정일자 부여 시 개인정보이용·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1차 계약갱신청구, 법률상담 유관기관 안내, 2차로 기존계약만료 6개월 전 2차로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신고, 재계약시 보증금증액 안내 등의 문자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서울시 임대차상담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적극 안내 및 연결하여 임차인들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814호
----------	--------

2023. 02. 2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8. 이재웅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22. 11. 18.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02. 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이재웅 의원)

### 가. 제안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지급대상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중복지원의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

- 본 조례안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양천구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전파로 인한 국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의 큰 위축은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쳐 일자리 감소 등 광범위한 계층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는 바, 기존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기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국민안전망'으로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양천구 일부 지역의 반지하 거주 주택의 침수 피해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음.

####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천구민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품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와 안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지급대상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 양천구를 체류지로 두고 있는 외국인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천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와 동일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전 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긴급생활지원금은 재난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의 관계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하여 신속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에 앞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전제됨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뿐 아니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함께 구민의견 수렴 및 구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827호
------------	--------

2023. 02. 2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02. 02. 양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 02. 03.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02. 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주민복지국장)

### 가. 제안이유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탁내용 :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운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상담 및 또래관계·사회성·인터넷중독 등 예방교육사업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 등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운영인력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부순환로83길53 2층	201.4㎡ (전용면적)	7명

- 위탁기간 : 3년(2023. 7. 1. ~ 2026.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소요예산 : 금454,251천원(2023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3년 제1차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기획예산과-1148(2023.1.27.)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가.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법인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나. 동의안 내용 및 법적 요건 검토

- 센터는 「청소년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9조에 따라 2013년부터 구립으로 위탁운영 중이며, 2023년 6. 30일로 위탁만료 예정으로 센터의 위탁 연혁은 【표 1】과 같음.

【표 1】 센터의 위탁 연혁

연차	사 업 기 간	위탁기관
1차	2013. 7. 1. ~ 2016.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차	2016. 7. 1. ~ 2018.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차	2018. 7. 1. ~ 2021.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4차	2021. 7. 1. ~ 2023. 6. 3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센터는 법 제29조,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공개 모집에 따라 위탁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살펴보면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① 민간위탁 사무명 ②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③ 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⑤ 민간위탁 기간 ⑥ 민간위탁 소요예산 ⑦ 수탁자 선정방식 ⑧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적정성 결과(기획예산과-1148, 2023.1.27)에 따라 문제없다고 사료됨.
-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센터의 관리·운영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또래관계·사회성, 복지서비스제공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주요현황은 【표 2】과 같음.  
참고로 본 동의안이 통과 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할 예정임.

【표 2】 주요현황

시 설 명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 재 지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53 2층		
시설규모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통합지원실, 교육실 등(전용면적 201.4㎡)		
이용인원	총1,200명(연 이용누계)	종사자수	7명
소요예산 (2023년)	금454,251천원(국비 50,051천원, 시비 78,273천원, 구비 325,927천원)		

####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지역 내 활동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안전망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828호
------------	--------

2023. 02. 23.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02. 02. 양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02. 03. 복지건설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02. 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도시관리국장)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상정함.

### 나. 주요내용

- 구 역 명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원(44,082.8㎡)
- 주요내용 :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가. 상정사유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약 32일간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양천구청 및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초 2012년 신정재정비촉진지구 1-5축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2014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임.  
이후 주민들의 요구 및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하고자 하는 것임.
- 풍부한 자연녹지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인접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지역임.
-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신정동 “신정동 115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여,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을 계획임.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44,082.8㎡)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치	면적(㎡)	용도지역	세대수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원	44.082.8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지역	855

- 정비구역 내 주요 목표 및 전략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녹지·보행축 연결,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주변단지와 열린 공간조성,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문화가로 활성화, 현황지형을 보존하는 지형순응형 데크조성, 주변의 개발단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고려 등 도시 맥락을 고려하고 자연에 순응 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자 함.

【표 2】 용도지역 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4,082.8	-	44,082.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4,282.3	감)30,707.3	3,575.0	17.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800.5	증)30,707.3	40,807.8	82.5

【그림 1】 < 용도지역 결정(기정) >



【그림 2】 < 용도지역 결정(변경)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 15층, 지하 4층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이로 인해 기존 85세대에서 956(분양 705세대, 공공 251세대)세대로 101세대가 증가될 예상이며, 2025년 착공하여 2030년 입주 예정임.

【그림 3】 건축개요(안)

구분	계획내용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법적상한	60%이하
	건축계획	24.01%
용적률	기준 / 허용 / 상한	174.84% / 194.84% / 212.78%
	법적상한	250% 이하
	건축계획	249.89%
층수	지상 15층 / 지하 4층	
연면적	지상 / 지하	101,225.3㎡ / 52,080.3㎡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 956세대</li> <li>- 의무공공임대 : 121세대</li> <li>- 기부채납 공공임대 : 52세대</li> <li>- 국민주택규모임대 : 78세대</li> <li>- 조합원/일반분양 : 705세대</li> </ul>	
주차대수	1,119대 (세대당 1.2대 계획, 법정: 1,044대)	

구분	세대수	비율 (%)
합계	956	100.0
40㎡ 이하	93	9.8
40㎡ 초과 ~ 60㎡ 이하	313	32.7
60㎡ 초과 ~ 85㎡ 이하	466	48.7
85㎡ 초과	84	8.8



-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공람,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